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24 선고 2019가단52632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6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. 11. 24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,589,0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6,589,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6. 4. 20. C의 D회사에 대한 자동차 임차료채무 등의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C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, 2007. 4. 24. D회사에 보증채무금 2,213,670원을 지급하였고, 이로써 C에 대하여 2019. 10. 31. 기준으로 6,589,01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.

나. C의 부 E이 서귀포시 F연립 G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8. 11. 24. 사망하였고, C의 상속분은 2/9 지분이었는데, 피고는 2019. 1. 5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24. 협의분할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'라 한다)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의 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,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6,589,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망인과 피고는 1970. 12. 20. 혼인한 이후로 계속 동거하며 같은 주소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1993. 2. 11. 망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생활한 이래로 망인과 피고는 계속 동거 생활을 하여 왔었고, 망인의 사망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혼자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, ② 망인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반면, 피고는 1988. 1. 28. 'H'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3. 10. 13. 폐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망인과의 생계비를 대부분 피고가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망인과 피고의 자녀들은 각 혼인을 하여 분가한 이후에는 망인과 피고를 특별히 부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망인에 대한 피고의 평소 부양 및 보호 등의 기여를 고려하여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 권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행위로 볼 수

있고, 단지 상속포기보다 간명한 절차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를 해할 정도로 상당성을 넘는 과대한 급부가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4. 결론

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태우

별지 부동산 목록

[집합건물] 서귀포시 연립 호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

연립 동

[도로명주소]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

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연립

1층 550.98㎡

2층 550.98㎡

3층 550.98㎡

지층 383.16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 16321.3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3층 호

철근콘크리트조 84.990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16321.3분의 109.129

위 부동산 중 2/9지분

